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¹⁾

I. 사건개요

이 사건의 상고인은 뉴델리에 거주하고 있는 약 25세의 미혼여성으로 5명의 자매 중 장녀이고 부모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상고인은 합의된 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상고인은 델리 고등법원에 항소할 당시 임신 22주차였고, 파트너는 상고인과의 결혼을 거부한 상황이었다. 상고인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오명과 괴롭힘을 경계하며 임신중절을 원하였다. 상고인은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양육할 정신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원치 않는 임신의 지속은 상고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하고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에서 낙태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법률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1971년 의학적 임신중절법(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1971, MTP Act, 이하 ‘임신중절법’이라 한다)’과 임신중절법에 따라 제정된 ‘2003년 의학적 임신중절규칙(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Rules 2003, MTP rule, 이하 ‘임신중절규칙’이라 한다)’은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 (b)²⁾와 임신중절규칙 Rule 3B³⁾는

1) X v. The Principal Secretary, Health and Family Welfare Department, 2022 SCC OnLine SC 1321. (Civil Appeal No 5802 of 2022) (2022. 9. 29.)

2) 임신중절법 제3조 - 등록된 의사에 의해 임신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1) 인도 형법(45 of 186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조항에 부합하여 등록된 의사에 의해 임신이 중단된 경우, 등록된 의사는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범죄의 유죄가 되지 아니 한다.

(2) 임신은 다음의 경우, 등록된 의사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며, (4)의 적용을 받는다.

(a) 임신기간이 20주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의사가 선의로 (i) 또는 (ii)의 의견일 경우, 또는

(b) 임신기간이 20주를 초과하였으나 24주를 초과하지 않았고 이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규정된 범주의 여성이면서 2명 이상의 등록된 의사가 선의로 (i) 또는 (ii)의 의견일 경우.

(i) 임신의 지속이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신체 또는 정신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을 내포함. 또는

(ii) 만일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형으로 고통 받을 상당한 위험이 있음.

설명1. (a)에 관하여, 자녀 수를 제한하거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이나 그녀의 파트너

강간, 미성년자,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장애인, 태아기형, 재난이나 긴급상황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지만 그 외의 낙태는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낙태 가능 시기가 임신 20주였으나 2021년의 개정으로 그 시기가 24주까지 확대되었다.

상고인은 델리 고등법원에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 (b)에 따라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범주를 규정한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규정 범위에 미혼여성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델리 고등법원은 상고인이 임신 24주차가 되던 2022년 7월 15일, 미혼여성이 배제된 임신중절규칙 Rule 3B가 위헌무효라고 판결된 것이 아닌 이상 그 규정은 유효하며, 해당 법원은 법률을 넘어선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상고인은 미혼여성이고 합의된 관계로 인한 임신이기 때문에 임신중절규칙 Rule 3B(c)에 해당하지 않아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 (b)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상고인은 인도 대법원에 특별상고허가를 신청하였고, 2022년 7월 21일 대법원은 상고인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상고인의 임신중절은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은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함하므로 대법원은 심리를 계속하였다.

가 사용한 기구 또는 방법의 실패로 임신이 된 모든 경우에 그러한 임신으로 야기되는 괴로움은 임신한 여성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형성한다고 추정될 수 있다.
설명2. (a) 및 (b)에 관하여, 임신한 여성이 강간에 의해 임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임신으로 야기되는 괴로움은 임신한 여성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형성한다고 추정된다.

(3) ... 생략 ...

(4)(a) 18세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18세에 이르렀으나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의 임신은 그녀의 후견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b) (a)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임신도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없이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3) 임신중절규칙

Rule 3B.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한 여성. — 다음 범주의 여성은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 (b)에 따라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즉, —

(a) 성폭행 또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

(b) 미성년자

(c) 진행 중인 임신 동안 혼인 상태의 변화(사별과 이혼)

(d)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2016년 장애인 권리법 하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주요 장애]

(e) 정신지체를 포함한 정신적 질병을 갖고 있는 여성

(f)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상당한 위험을 가진 태아기형 또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 될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형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g) 정부의 선언에 따라 인도주의적 상황이나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있는 임신한 여성.

II. 쟁점 및 판단⁴⁾

1. 상고인 측의 주장

상고인 측 대리인은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 (b)와 임신중절규칙 Rule 3B(c)가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범주에서 미혼여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해당 규정들이 혼인 여부에 근거하여 여성을 차별하므로 인도 헌법 제14조⁵⁾의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신중절규칙 Rule 3B(c)의 ‘혼인 상태의 변화(change of marital status)’는 미혼여성이나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별거중이거나 버림받은 여성 등을 포함하는 ‘관계상태의 변화(change in the status of a relationship)’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인도에서는 1971년 임신중절법이 제정되었으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여성들은 은밀하고 위험한 낙태시술로 내몰려 왔다. 이러한 장벽에는 불충분한 기반시설, 인식의 부족, 사회적 낙인, 비밀유지의 보장 실패 등이 포함된다. 여성의 혼인 외 성적 자율권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미혼여성들은 특정한 장벽에 맞부딪치기도 한다. 이러한 장벽들은 싱글여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시술을 단념하게 만든다. 이러한 장벽들은 낙태시술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으로써 여성의 재생산적 자율권(reproductive autonomy)을 부정한다.

4) 대법원장 Dhananjaya Y. Chandrachud, 대법관 Hima Kohli, 대법관 Pamidighantam Sri Narasimha의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판결.

5) 인도 헌법 제14조. 법 앞의 평등.

국가는 인도 영토 내에서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이나 평등한 법의 보호를 부정하지 않는다.

가. 등록된 의사들의 기소에 대한 우려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위에 언급된 요소들만이 아니다. 인도 형법상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안전한 낙태를 막는다. 임신중절법은 낙태를 범죄화하는 인도 형법 규정의 예외를 규정할 뿐이다. 임신중절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신중절은 임신중절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형법상 범죄가 된다. 이러한 요건에는 임신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 장소,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된다. 임신중절은 ‘등록된 의사(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RMP)’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 의해 설립 또는 유지되는 병원이나 정부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임신중절법 제4조, 제5조). 임신중절법상 등록된 의사의 의견은 결정적이다. 임신중절법상 여성은 등록된 의사의 의견에 근거하여서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이는 임신중절법을 시술자 중심적 법률로 만든다. 여성의 낙태 접근권은 등록된 의사의 승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의사가 시술을 거부할 경우 여성은 법원을 찾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낙태시술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미로 같은 법률하에서 기소에 대한 두려움은 등록된 의사들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와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을 막는 주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법상 기소될 우려는 종종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하고, 등록된 의사들이 가족들의 동의나 서류상 증거, 사법적 승인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요건들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된 의사들이 시술을 거부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나. 미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

등록된 의사의 임신중절 시술 결정은 미혼여성 및 혼전 성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 모성의 책임을 떠맡는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미혼여성의 낙태는 불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과 그 파트너는 적절하지 못한 시설에서 무면허 의사에 의한 시술을 받게 되고, 이는 높은 합병증의 위험과 임신부 사망률의 결과를 야기한다.

여성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성 건강 교육의 부재로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불충분하거나 없고, 피임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자신의 재생산 건강에 관해 의료인들과 상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미혼이나 싱글여성은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임신한 싱글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은 더욱 크다. 그들은 종종 가족이나 파트너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는 무면허 의사에 의한 낙태시술의 확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다. 재생산 건강 접근권에 대한 장벽을 염두에 두고,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과 임신중절규칙 Rule 3B(c)의 해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3. 분석

가. 목적론적 해석의 원칙

문제는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범위에 미혼여성, 싱글여성, 파트너가 없는 여성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는 Rule 3B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 해석의 중요한 원칙은 입법부의 의도와 법률 제정의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의도는 법률 제정의 목적, 피해와 그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이해하기 위해 법률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고려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용어의 의미에 대한 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된 용어에 특이하고 예외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⁶⁾ 목적론적 해석을 함에 있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목적론적 해석 권한이 판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입법 의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판사가 제시한 대안적 해석은 법규정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해당 법률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법률에 종속된 규정의 해석은 수권법률에 부합되어야 하고 수권법률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⁷⁾은 수혜적 법률의 의미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한 경우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시켰다.

나. 권리의 근원으로서의 혼인제도의 초월

많은 법률상의 혜택이 혼인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하지만, 현대의 법률은 혼인이 개인의 권리의 전제조건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있다. 법률 규정의 목적을 위한 해석을 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회적 관습의 변화이다. 법률은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맞춰 해석되어야 한다.⁸⁾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법률과 사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Navtej Singh Johar v. Union of India, (2018) 10 SCC 1 판결에서 대법원

6) AHARON BARAK, PURPOSIVE INTERPRETATION IN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at page 306.

7) Kerala Fishermen's Welfare Fund Board v. Fancy Food, (1995) 4 SCC 341; Bharat Singh v. Management of New Delhi Tuberculosis Centre, New Delhi, (1986) 2 SCC 614; Bombay Anand Bhavan Restaurant v. ESI Corpn, (2009) 9 SCC 61; Union of India v. Prabhakaran Vijaya Kumar, (2008) 9 SCC 527.

8) Badshah v. Urmila Badshah Godse, (2014) 1 SCC 188.

은 헌법의 변화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변화적 입헌주의(transformative constitutionalism)는 모든 개인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불러온다. 변화적 입헌주의는 사법부에 헌법의 최고성을 보장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헌법과 기타 조항들을 그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집행함으로써 사회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1) 가족관계의 현대적 또는 이례적 형태

법률은 사회적 변화가 가족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S. Khusboo v. Kanniammal, (2010) 5 SCC 600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거관계나 혼전 성관계를 범죄의 관점에서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Deepika Singh v. Central Administrative Tribunal, 2022 SCC OnLine SC 1088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족 단위가 이례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사회적 현실은 비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발현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법적 인정은 비전통적 가족의 구성원들도 임신중절법을 포함한 수혜적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 기혼여성과 미혼 또는 싱글여성의 평등한 지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회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법률을 제정해왔다. 1961년 모성혜택법(Maternity Benefit Act 1961), 2005년 힌두 상속(개정)법(Hindu Succession (Amendment) Act 2005), 1956년 힌두 입양 및 양육비법(Hindu Adoptions and Maintenance Act 1956), 1890년 후견인 및 피후견인법(Guardian and Wards Act 1890) 등은 여성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법률은 미혼여성도 입양, 상속, 모성혜택에 있어 기혼

여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기혼여성과 미혼 여성 모두 자신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선택을 할 동일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평등 사회를 향한 법률의 발전 속에서 임신중절법과 임신중절규칙의 해석은 오늘날 사회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지난 시절의 사회 관념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변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풍습과 관습도 변해야 한다. 변화된 사회적 맥락은 법률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법률은 변화 없이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해석은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정의라는 대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3) 임신중절법의 목적

입법에 이르게 된 배경과 상황, 그리고 법률이 제정되던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입법 연혁이나 입법의 목적 및 이유서(Statement of Objects and Reasons)를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⁹⁾

임신중절법의 제정 전에는 임신중절이 형법에 의해 다루어졌다. 인도 형법 제312조는 여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의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한 여성의 유산을 야기하는 모든 사람(임산부 당사자를 포함하여)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고, 형법 제313조는 여성의 동의 없이 ‘유산의 야기’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었다. 형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는 원하는 임신과 원하지 않는 임신 사이의 구분을 두지 않아 여성의 안전한 낙태에의 접근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1971년 전까지 낙태의 형법상 범죄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불안전하고 비위생적이며 규제를 벗어난 낙태 기술을 받게 만들었고 임산부의 질병과 사망을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임신중절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의도는 형법 제312

9) Chiranjit Lal Chowdhury v. Union of India, 1950 SCR 869; A. Thangal Kunju Musaliar v. M. Venkatachalam Potti, 1950 SCR 869; State of Himachal Pradesh v. Kailash Chand Mahajan, 1992 Supp (2) SCC 351; National Insurance Co. Ltd. v. Swaran Singh, (2004) 3 SCC 297.

조하의 규제 중 일부를 풀고자 하는 것이었다. 임신중절법은 의회에서 ‘보건적’, ‘인도주의적’, ‘우생학적’ 조치로 제정되었다. 임신중절법의 취지는 여성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학적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임신중절법은 등록된 의사에 의해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혜적 입법이었다. 수혜적 입법으로서의 임신중절규칙과 임신중절법 조항들에 관해서는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에 이루어진 임신중절법 개정은 법률의 혜택을 모든 여성들에게 확대하고자 함이었다. 2021년 9월 24일에 발효된 2021년 개정 임신중절법은 제3조에 주요 변화를 도입하여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상한을 임신 20주에서 임신 24주로 확대시켰다. 개정 전에는 임신 20주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21년의 개정으로 등록된 의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특정 범주의 여성에게는 24주까지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1년 개정은 피임의 실패가 여성의 정신 건강에 야기하는 심각한 피해의 법률상 추정을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기도 하였다. 개정 전 임신중절법의 설명II(Explanation II)는 ‘기혼여성 또는 그녀의 남편’이 자녀 수를 제한할 목적으로 사용한 기구나 방법의 실패로 인한 임신이 야기하는 괴로움은 여성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형성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2021년의 개정 이후에는 ‘모든 여성 또는 그녀의 파트너’로 용어가 바뀌었다(2021년 개정 임신중절법 설명1). 입법부는 ‘기혼여성 또는 그녀의 남편’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임신중절법 제3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혼인제도 밖에서 발생한 임신도 이 법률의 보호 안에 들어오도록 의도하였다.

‘목적 및 이유서’에 따르면 2021년 임신중절법 개정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의 접근을 증가시키고 임산부 사망 및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임신중절이 가능한 임신주수를 늘린 것은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의 존엄성, 자율성, 비밀성, 정의를 보장하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기혼여성 또는 그녀의 남편’ 대신 ‘모든 여성 또는 그녀의 파트너’를 포함

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당시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개념의 발전에 맞춰 낙태시술소에 대한 접근권이 모든 여성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개정 이후 임신중절법 제도는 의학적 임신중절에 있어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존엄하게 살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도입된 진보적인 입법으로 불렸다.

생명권의 중대한 측면에 관한, 그리고 재생산권에 대한 접근 강화에 관한 법문은 가장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2021년 임신중절법 개정에 관한 의회 토론이 이루어지는 동안, 불안정한 낙태와 임산부 사망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계가 공유되었다. 불안정한 낙태는 임산부의 사망과 질병에 대한 주된 그러나 예방 가능한 원인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낙태는 1971년 임신중절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임산부 사망의 세 번째로 높은 원인이 되었다. 불안정한 낙태와 관련하여 인도에서 매일 약 8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¹⁰⁾ 또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인도에서 이루어진 낙태의 67%가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구분된다고 한다.¹¹⁾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여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불안정한 낙태를 겪을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낙태로 인한 심각한 사회 병폐를 고려하여, 2021년 임신중절법 개정은 합법적 낙태의 이용가능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4) 해석 수단으로서의 임신중절법: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의 이해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 (b)에 따르면 2명 이상의 등록된 의사가 선의로 판단하기에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범위에 해당하는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그 여성에게 ① 생명의 위험이나 ② 신체 건강에 대한 심각한 피해나 ③ 정신 건강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을 내포한다고 판단하는

10)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Seeing the Unseen: The case for action in the neglected crisis of unintended pregnancy, State of World Populations” (2022).

11) Ryo Yokoe, Choudhury SS, et al., Unsafe abortion and abortion-related death among 1.8 million women in India, 4(3) BMJ Global Health (2019).

경우 낙태가 허용된다.

여기서 ‘신체 또는 정신 건강에 대한 심각한 피해’라는 표현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에 첨부된 두 개의 설명은 임신으로 야기되는 괴로움이 여성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형성한다고 추정되는 상황을 규정하였다.

‘정신 건강’이라는 표현은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며 ‘정신장애나 정신질병의 부재’ 이상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 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그들의 능력을 실현하며 잘 배우고 잘 일하며 그들의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안녕’이라고 정의하였다.¹²⁾ 정신 건강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의 환경과 사회적 맥락 내에서의 경험이다. 정신 건강이라는 용어의 이해는 의학적 용어에 국한될 수 없고 일상용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임신중절법도 여성의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를 해석할 때 여성의 주변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를 결정할 때 임신부의 실제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해석

입법부는 임신중절규칙 Rule 3B를 제정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이 그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를 겪을 때, 그리고 아이를 갖기로 한 그들의 결정이 임신 20주가 넘어서 영향을 받을 때 낙태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임신중절규칙 Rule 3B는 성폭행 피해자, 미성년자, 혼인 상태의 변화,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태아기형, 재난이나 긴급 상황을 임신중절이 가능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주의 여성들의 공통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재정적 상황과 관련하여 종종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각 유형들은 임신의 인

12)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Summary Report)” (2004).

지가 늦었거나 임신을 원하는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임신 20주가 넘어서 낙태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다. 법률은 그러한 상황에서 임신이 고충을 야기하고 여성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수많은 방식을 인지하고 임신중절 가능 시기를 늘림으로써 여성에게 달갑지 않은 임신을 중단할 자유를 주었다.

Rule 3B(a)는 강간 피해자가 엄청난 낙인에 직면하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다. 기혼여성도 성범죄나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강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여성은 남편에 의한 비동의 성교의 결과로 임신할 수 있다. 낯선 사람만 성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오해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가족 내에서의 성범죄나 젠더 기반 범죄는 오랫동안 다수의 여성들이 겪은 경험의 일부를 이뤄왔다.

남편이 강간한 결과로 기혼여성이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성폭력의 본질과 동의를 외형이 결혼을 결정했다고 변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제도는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강간죄를 규정한 인도 형법 제375조는 강간죄의 예외로 “남성이 15세 미만인 자의 아내와 성교한 경우는 강간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중절법과 임신중절규칙 하에서 부부간의 강간도 강간으로 인정하는 해석을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75조의 예외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형법 제375조의 예외규정은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심사 중이므로 그 합헌성 여부는 해당 재판부나 다른 적절한 소송에서 판단되도록 남겨두는 바이다.

형법 제375조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규칙 Rule 3B에서의 ‘성폭행’ 또는 ‘강간’이라는 용어의 의미에는 아내에게 범해진 남편의 성폭행 또는 강간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여성은 자신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해를 가한 파트너와 아이를 낳아 기르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여성이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성폭행, 강

간, 근친상간을 증명하는 소송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이나 임신중절규칙 Rule 3B(a)는 범죄자가 형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임신중절법상 강간의 주장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법원에서 우선 입증되어야 한다고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요구는 임신중절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임신중절규칙 Rule 3B(b)는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범위에 미성년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 중에는 성교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신의 징후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의 성 건강 교육의 부재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식기관이 기능하고 피임기구 및 피임법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혼전 성관계를 둘러싼 금기는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기로 인해 어린 소녀들은 의학적 도움과 개입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모나 후견인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게 된다. 미성년자들은 종종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들은 그 학대의 본질을 모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뒤늦게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임신중절규칙 Rule 3B(d)는 신체 장애를 가진 여성을, Rule 3B(e)는 정신 장애를 가진 여성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여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임신 사실을 늦게 깨닫거나 뒤늦게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 쉽다. 정신 장애를 가진 여성, 특히 언어와 소통에 장애가 있는 여성이 성폭력에 희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장애는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표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신중절규칙 Rule 3B(f)은 태아기형의 경우를, Rule 3B(g)는 인도주의적 상황이나 재난이나 긴급 상황을 포함시킨다. 난민의 경우 Rule 3B(g)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긴급 상황이나 재난의 발생 전에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상황이 바뀐 경우 변화된 상황은 임신의 지속 의지나 아이의 양육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사건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임신중절규칙 Rule 3B(c)는 임신 동안의 혼인 상태의 변화(사별과 이혼)를 임신중절이 가능한 여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의 환경에 작용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Rule 3B(c)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Rule 3B(g)- 재난이나 긴급 상황 -와 비슷하다. 즉 임신 중 여성의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그 이유이다.

Rule 3B(c)는 혼인 상태의 변화가 종종 중요한 상황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이다. 임신 중 혼인 상태의 변화는 여성이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 일어날 수 있다. Rule 3B(c)가 그 끝에 괄호로 사별과 이혼을 언급했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다.

혼인 상태의 변화는 여성이 가족이나 파트너에게 버림받아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이 파트너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아이를 양육할 재원이 없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들은 임신중절규칙 Rule 3B에 열거된 범주 외에 다른 이유로도 이 범주의 상황과 같은 처지(사회적, 정신적, 재정적, 또는 신체적으로)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실직했거나,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급성, 만성,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을 수도 있다. 만일 Rule 3B(c)가 오직 기혼여성에게만 그 혜택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기혼여성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고착화될 것이고 법률의 혜택은 기혼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가르는 이 인위적인 구분은 헌법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법률의 혜택은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Rule 3B가 여성의 중요한 상황의 잠재적 변화를 모두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일부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임신중절법의 목적과 전체 법체계, Rule 3B에 언급된 범주의 여성들을 보건대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 (b)와 임신중절규칙 Rule 3B(c)의 혜택을 Rule 3B에 열거된 상황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아님이 분명하다.

4. 임신중절법과 임신중절규칙의 해석을 활성화시키는 헌법적 가치

재생산적 자율권, 존엄하게 살 권리, 평등권, 프라이버시권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들은 임신중절법과 임신중절규칙의 해석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에 관해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가. 재생산적 자율권

재생산권의 범위는 여성이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을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생산권은 여성이 자신의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집합체를 포함한다. 재생산권은 피임과 성 건강에 관한 교육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며, 어떤 피임기구를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리와 아이를 가질지 여부와 그 시기를 선택할 권리, 자녀 수를 선택할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접근할 권리, 재생산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여성은 강압이나 폭력 없이 이러한 권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가족, 공동체, 종교, 카스트 제도 등의 외부적 사회적 요소들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치며, 재생산적 결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낙태에 대한 결정은 복잡한 삶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으로, 외부적 개입이나 영향 없이 오직 여성 자신만이 자기의 방식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재생산적 자율권은 신체적 자율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이 여성의 신체와 마음에 가져오는 영향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임신

으로 여성은 신체적 변화와 위험을 겪는다. 따라서 임신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과 선택의 자율권에 굳게 뿌리를 두어야 한다.

K S Puttaswamy v. Union of India, (2017) 10 SCC 1 판결에서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이 헌법 제21조¹³⁾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인정하였다. Puttaswamy 판결에서 Chelameshwar 대법관은 아이를 낳을지 낙태할지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재생산적 자율권을 다룬 바 있다. 이에 앞서 Suchita Srivastava v. Chandigarh Administration, (2009) 9 SCC 1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생산적 자율권의 개념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Suchita Srivastava 판결은 여성의 재생산적 자율권이 헌법 제21조 하의 개인적 자유에 포함되며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밝힘으로써 여성의 재생산권을 헌법상 권리의 핵심에 위치시켰다.

선택의 자율권은 프라이버시권의 필수적 부분이다. 선택의 자율권은 내밀한 관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다. 프라이버시권은 결정의 자율권을 보호하여 개인이 내밀한 사적 선택을 하고 자신의 신체와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도록 한다. 선택의 자율권은 여성이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임신할 수 있다. 원하는 임신의 경우 이는 양 파트너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유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그 짐은 임신한 여성만 짊어지게 된다. 헌법 제21조는 정신 또는 신체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낙태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여성 자신뿐이다.

13) 인도 헌법 제21조. 생명과 개인적 자유의 보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그의 생명 또는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나. 존엄권

존엄권은 모든 개인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자치적 주체로 대우받을 권리를 압축한 것이다. 즉,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을 지니고, 스스로 규정하고 결정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존엄권은 헌법 제21조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핵심요소이다.

원치 않는 임신의 지속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낙태와 관련하여 존엄권은 임신중절 결정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의 재생산적 결정 능력과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아우른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지만 외부적 여건과 국가에 의해 강요되는 처우에 의해 침해되기 쉽다. 국가에 의한 부당한 개입 없이 재생산적 선택을 내릴 모든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사상의 중심이다.

5.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한 헌법상 명령의 촉진

법조항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조항을 무효로 만들기 보다는 유효로 만드는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¹⁴⁾ 법원은 법조항의 합헌적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¹⁵⁾ 헌법상의 명령에 역행하는 좁고 엄격한 법해석은 피해야 한다.

임신중절규칙 Rule 3B(c)을 제한적이고 좁게 해석한다면 이는 임신 20주와

14) JUSTICE G.P SINGH, G.P. SINGH: PRINCIPL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LEXISNEXIS, 2016), at page 48; CIT v. S. Teja Singh, AIR 1959 SC 352; M. Pentiah v. Veeramallappa Muddal, 1961 (2) SCR 295; Tinsukhia Electric Supply Co. Ltd. v. State of Assam, (1989) 3 SCC 709.

15) K.P. Varghese v. ITO, (1981) 4 SCC 173; M.L. Kamra v. Chairman-cum-Managing Director, New India Assurance Co. Ltd, 1992 SCR(1) 220.

임신 24주 사이의 미혼여성에게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의 접근권을 박탈하므로 위헌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임신중절법 제3조 제2항 (b)와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목적은 중요 상황의 변화로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 20주와 24주 사이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건대 임신중절규칙 Rule 3B의 범위에 미혼여성이나 싱글여성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Rule 3B를 기혼여성에게만 국한되도록 좁게 해석한다면 이는 이 조항을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에 위반되게 만들 것이다. 기혼여성에게는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면서 미혼여성이나 싱글여성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4조의 정신에 저촉되는 것이다.

임신중절규칙 Rule 3B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고려하건대 우리는 그 합헌성에 대한 심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6. 국제법상 인도의 의무

헌법 제51조¹⁶⁾는 국가가 국제법과 조약상 의무를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3년 인권보호법(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1993)은 국제협약과 조약을 인도 인권법의 일부로 인정하고 포함시키고 있다. 인도가 비준한 조약과 협약 속의 국제인권법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설명하고 발효시키는 범위 내에서 국가를 구속한다.¹⁷⁾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모든 인간의 내재적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낙태에 대한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언

16) 인도 헌법 제51조. 국제 평화와 안보의 고취.

국가는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 (a) 국제 평화와 안보의 고취
- (b) 국가 간 공정하고 명예로운 관계의 유지
- (c) 체계적인 사람들의 상호간 거래에 있어 국제법과 조약상 의무의 존중 함양
- (d)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독려.

17) People's Union of Civil Liberties v. Union of India, (1997) 3 SCC 433.

급하였다.¹⁸⁾

인도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였으며, 이 규약은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는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신체 및 정신 건강권의 필수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

인도가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2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가족계획, 임신, 분만, 산욕기와 관련된 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당사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들이 자녀 수와 출산 간격에 관하여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한 관련 정보에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인도의 국제법상 의무는 임신중절법을 앞서 언급된 의무들에 부합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재생산권은 인도 헌법의 원칙 및 인도가 비준한 다양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국제법 원칙과 합치되어야 한다. 임신중절법과 임신중절 규칙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국제법상 인도의 의무를 돕는다.

7. 국가의 적극적 의무

재생산적 자율권의 진정한 실현은 관련 문제가 여성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건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에는 사회적 낙인뿐만이 아니라 카스트 제도와 경제적 여건도 있다. 개인

18)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6 (2018) on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the right to life, CCPR/C/GC/36 (30 October 2018).

19) Economic and Social Council, General Comment No. 22 (2016)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GC/22 (2 May 2016).

병원에서 낙태에 드는 비용은 월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쌀 것이다. 시골의 공공병원은 종종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자원의 질과 종류가 매우 열악하다.

임신중절법은 모든 임신부의 재생산적 자율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임신부가 보건 시설에 접근할 권리 및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도 내포하고 있다. 헌법 제38조 제2항²⁰⁾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47조²¹⁾는 국가가 공중보건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Paschim Banga Khet Mazdoor Samiti v. State of West Bengal*, (1996) 4 SCC 37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에게 헌법 제21조가 모든 사람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헌법상의 의무는 국가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시의 의료 처치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국가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건강권 특히 개인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할 적극적인 의무를 진다. 재생산권의 측면에서 국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낙태를 비롯한 재생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재생산과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정보가 모두에게 전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의도되지 않은 임신을 피하고 가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피임기구에의 접근이 반드시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각 디스트릭트(district)²²⁾마다 의료시설과 등록된 의사들이 갖춰

20) 인도 헌법 제38조.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사회질서 보장.

(1) ... 생략 ...

(2) 국가는, 특히, 소득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지위, 시설,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인도 헌법 제41조. 국가의 영양 및 생활수준 향상 의무와 공중보건 개선 의무.

국가는 그 국민의 영양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공중보건의 개선을 최우선 임무중 하나로서 유념해야 하며, 특히 국가는 약용 목적 외에는 건강에 해로운 주류와 마약류의 소비가 금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디스트릭트는 인도에서 주(州)의 가장 큰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디스트릭트 안에 시, 타운, 빌리지 등이 속해 있다.

져야 하고 모두에게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등록된 의사들이 모든 환자들을 동등하고 세심하게 치료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치료는 카스트나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소 때문에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현실이 될 때만이 신체적 자율권과 존엄권이 실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상기된 내용과 같이 판단하는 바이며, 고등법원에 제출되었던 청구도 이에 따라 인정된다.

III.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미혼여성과 싱글여성(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인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매우 진보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미혼 여성과 싱글여성 낙태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을 강조하고 부부간 강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에서는 2021년 임신중절법 개정으로 낙태 가능 주수가 임신 20주에서 24주로 늘어나게 되었지만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여성의 범위를 규정한 임신중절규칙 Rule 3B에 미혼여성과 싱글여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혼여성 및 싱글여성의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과 합헌적 해석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인권운동가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 판결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21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²³⁾에서 헌법상 낙태권을 인정하였던 *Roe*

23)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597 U. S. ____ (2022)

v. Wade 판결²⁴⁾을 폐기하고 낙태권 인정 여부의 판단을 주에 넘긴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24) Roe v. Wade, 410 U. S. 113 (1973)